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41
----------	------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3. 상정일자 :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 제안이유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
 -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안 제13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의 개정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임.
- 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은 같음.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사무국 관련 사항 삭제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

1) 「지방자치법」제158조(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주요사항 검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이하 “협의회”라 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목적(규약안 제1조)”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2015년 9월에 구성(최초 2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현재는(2020년 2월기준) 8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구성일 : 2015. 9. 14.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 연회비 : 5,000천원
- 가입일 : 2016. 5. 3.
- 가입현황('20.2월기준) : 서울특별시 및 22개 자치구 등(미가입 자치구 : 중랑구, 동작구, 서초구)등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

□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152조제2항²⁾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제출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규약 개정의 주요내용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등(약 제1조 등)
 - 협의회는 설치 목적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³⁾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구성 조항을 인용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p> <p>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p>	<p>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p> <p>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p>

2) 각주 1 참조

3) 각주 1 참조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를----- -----.
---------------------------------	--------------------

○ 공동사무국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 규약 개정안은 행정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협의회장의 지자체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동 행정협회가 구성될 당시 협회의 구성주체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두고 있고 협회 가입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가입 지자체가 2015년 9월 27개에서 85개(2020년 2월 기준)로 늘어나 협회 운영예산도 함께 증가한 바, 협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업무분장의 개선의 필요성과 협회로만 단독 사무국을 운영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u>	제4조(임원 및 조직) 제4항④ 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u>

○ 협회 부담금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3조)

-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2018)⁴⁾에 따라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부담금 관리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3조(회계 및 결산)① ~ ③ (생략)</p> <p>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p>

4) 국민권익위원회(2018.8),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3 종합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행정협의회 규약의 개정 사항을 담은 것으로, 협의회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무조직을 개선하며,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협의회 규약이 2015. 9.14일 최초 제정 이후 금번 동의안을 포함하여 3번의 개정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1차 개정) 2017.11. 3일, (2차 개정) 2018. 9.13일, (3차 개정) 2019. 9.24일

〈참고자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 및 2018년 개정 규약 동의안 시의회 미제출 사유서

1. 사유서 대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7.11. 3.개정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9.13.개정

2. 추진경과

- 서울시는 2016. 5. 3.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시의회에 제출(의안번호 1566호, '16.12.2) 하고, 의결을 거쳐 고시함
- 개정규약(2017.11. 3.) : 회장 지자체 오산시, 개정안 의회 미제출
- 개정규약(2018. 9.13.) : 회장 지자체 오산시, 개정안 의회 미제출
- **2019. 9.24.개정규약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전국 지자체)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2019. 9.24.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 안내(도봉구 교육지원과-16948호, '19.11.13)**
⇒ '20년 5월 임시총회전까지 절차 완료 협조
 - 서울시는 2020. 4.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19.9.24) 규약안'을 금번 시의회 동의 안건으로 제출(의안번호 1441호)함

3. 미제출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이 미비 하였고, '15년에 출범하여 1년마다 회장 지자체 및 사무국이 교체되면서 의결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음
- 금번 개정('19.9.24) 규약안에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지방자치법 제152조)을 삽입하여 추진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향후 규약 개정 시에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4. 담당자(개정안 미제출당시)

구 분	주무관(업무기간)	팀 장	과 장	회장 지자체
규약 2017.11. 3.개정	안○○	김○○	김○○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김희영 주무관
규약 2018. 9.13.개정	('16.5.1.~'18.10.31)	마○○	김○○	(☎ 031-803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441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1)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

- 1)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 1)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안 제13조)

-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 조치 근거 조항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자 :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박영실 (☎ 2133-518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2015. 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11. 3. 개정
2018. 9.13. 개정
2019. 9.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개정 2017.11.3.)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11.3., 2019. 9.24.)

제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정기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

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 24.)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 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 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 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설 2019. 9. 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3.)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 24.)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협회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회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회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회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회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개정 2020. 2.)

지역	지자체명
서울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4)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1)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7)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경기 (13)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5)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경북 (4)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u>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p> <p>제4조(임원 및 조직) ④ <u>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 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u></p> <p>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u>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u></p> <p>< 신 설 ></p>	<p>제1조(목적) <u>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 -.</p> <p>제3조(구성) ----- “별표” ----- -----.</p> <p>제4조(임원 및 조직) 제4항 ④ <u>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 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u></p> <p>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u>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u></p> <p>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생략) 1. ~ 3.(생략)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p> <p>< 신설 ></p>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 ③ (생략)</p> <p>< 신설 ></p> <p>별표 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p> <div data-bbox="188 1205 758 15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50%; text-align: center;"> 협의회장 지자체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50%; text-align: center;">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장 - 회장지자체: 담당업무 국장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td> </tr> </table> </div> <p>별표 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협의회장지자체</th> <th style="width: 50%;">유니세프한국위원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정기총회 관련업무 • 실무진 회의개최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승인 • 이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업무 • 이동친화도시 관련지표 기획 • 이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 및 박람회 연사초청관련 업무 </td> </tr> </tbody> </table>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장 - 회장지자체: 담당업무 국장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협의회장지자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정기총회 관련업무 • 실무진 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승인 • 이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업무 • 이동친화도시 관련지표 기획 • 이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 및 박람회 연사초청관련 업무 	<p>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p> <p>< 삭제 ></p> <p>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p> <p>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p> <p>< 삭제 ></p> <p>< 삭제 ></p>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장 - 회장지자체: 담당업무 국장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협의회장지자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정기총회 관련업무 • 실무진 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승인 • 이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업무 • 이동친화도시 관련지표 기획 • 이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 및 박람회 연사초청관련 업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 공동 부담 : 부담액 5,000천원/년
 - 2020년 ~ 2024년 : 5,000,000원 × 5년 = 25,000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공공운영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자치단체 부담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방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세외수입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박영실 주무관(02-2133-5183)